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9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정점식·정운천·이만희

이달곤・이양수・송석준

김정재 · 임이자 · 박완수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9조).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 확충 및 교통비 지원 등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와 어촌 및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			
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			
	승)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u>사항</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	①			
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및 교통비 지원			
	<u> </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활성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와 어촌 및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149조(기]금의	용도)	1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증진에 관한 사업